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간조업 곤란 지역 일출전·일몰후 일정시간 조업 허용 〉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88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간조업 곤란 지역 일출전·일몰후 일정시간 조업 허용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2.
3. 회 부 일 : 2026.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주간조업 곤란 지역 일출전·일몰후 일정시간 조업 허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하는 경우, 강화해역 등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② (생략) <u><신설></u>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¹⁾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의 일시적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인천 및 강화해역 등 접경지역 해역은 국가안전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출 전 및 일몰 후 야간 조업과 항행에 대한 일시적 제한 조치가 실시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의 이동시간 부족, 물때(조수간만)와의 불일치 등으로 어업인들의 생계상 애로 사항이 가중됨에 따라 조업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됨.

이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및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으며, 2026년 7월부터 인천연안 해역(37°30′ 이남)은 야간 조업·항행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강화해역(37°30′ 이북)에 대해서는 일출 전·일몰 후 각 30분(성어기 최대 각 1시간)을

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장하는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음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이 극심한 강화해역의 특성상 현행 시범운영 수준의 시간 연장만으로는 주간 조업 및 출·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출 전 및 일몰 후 일정 시간(각 2시간) 동안 조업을 의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조업시간을 확보하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 제16조제1항³⁾은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어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조업 또는 항행의 일시적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 제2항⁴⁾은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업 및 항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참고 1 「인천·경기 해역(강화 포함) 야간조업 허용 관련 현황」 참조

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즉, 현행법 체계상 조업 및 항행 제한 조치의 실제 처분·집행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안보·치안상의 이유로 이를 요청하는 협의·요청 주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개정안(안 제16조제3항)⁵⁾은 제한 처분의 권한이 없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주체로 하여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의 법체계상 정합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조업·항행 제한의 완화 또는 해제 역시 현행 행정주체 체계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과 같이 '2시간 이내 조업 의무 허용'과 같은 기속·강제 규정을 법률에 둘 경우, 접경해역 및 조업한계선 인근 해역의 군사·안보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보 위기 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해상 통제 및 어업인 안전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의무적 허용 규정의 일률적 도입보다는, 어업인의 생계 보

5) 안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③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장이라는 공익과 국가안보·해상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안보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역별·계절별 여건에 맞게 조업제한을 유연하게 완화·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해양수산부는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접경해역 내 군사·안보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조업 허용 강제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신 일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업 및 항행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422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인천·경기 해역(강화 포함) 야간조업 허용 관련 현황

□ 추진 현황 및 배경

- (현황) '82.11월부터 월북 방지 등 조업질서 유지 목적으로 인천해역 일부 어장*(강화해역 포함)은 야간 조업·항행 제한(현행 어선안전조업법)
* 초지도, 만도리, 팔미도 등 18개 어장 / 일몰~일출 이내 제한
- (어업인 요구)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조업 및 위판을 위해서는 야간 조업·항행 구역 확대 필요* 요구('24.2~)
* ①강화도 남단 해역은 전면 해제 ②조업한계선 인근 강화도 해역은 조업시간(4시간 연장)
- (그간 노력) 어업인 요구에 따라 '25년 6월부터 '26년 1월까지 국방부, 해경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방 어업지도선 배치 등 여러가지 대안 논의

□ 추진 성과

- (규제완화) ①인천연안 해역(37°30' 이남)은 야간 조업·항행 제한 전면 해제, ②강화 해역(37°30' 이북)은 조업시간 연장 시범운영 합의('26.5.11)

□ 인천연안 해역(37°30' 이남) 시범운영('26.3~6월) ⇒ 전면해제('26.7~)

- '26.7.1부터 24시간 야간 조업·항행 제한 전면해제
* '26년 성어기 시범운영 기간(3월~) 야간 월선 및 중대사고 없음(지도선 야간 배치)

□ 강화 해역(37°30' 이북) 전면제한 ⇒ 시범운영

- (운영기간) '26. 7. 1 ~ '26. 12. 31
- (주요내용) 강화도 전 연안 일출전·일몰후 각 30분 야간 조업·항행 시간 확대, 성어기(4~6월 및 9~11월)는 일출전·일몰후 각 1시간 확대*
* 젓새우 주 어장인 강화해역 남단 어장 7개(만도리 B, 새터, 선수, 후포, 긴곶지선, 분오리, 동검도, 황산도 어장) / 단, 접경해역과 인접한 강화 북단 8개 어장은 성어기 연장 제외

□ 기대 효과

-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km² 규모의 야간 어장이 확대되고, 9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여 연간 136억원의 추가 소득 예상

참고 2

인천 해역(강화 포함) 일시적 조업 · 항행 제한 해역도

	(평 시) ①~⑧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 조업 또는 항행 확대
	(평 시) ⑨~⑮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 조업 또는 항행 확대 (성어기) ⑨~⑮ 4~6월, 9~11월 일출 전후 각 1시간 조업 또는 항행 확대 운영(평시대비 각 30분 연장)
	(연 중) ⑯~⑰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전면 해제(24시간)

